

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

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

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(보조) 사업외 275 건인

104,199,400,540 원으로서

- 명시이월 (161 건) 63,042,222,250 원
- 사고이월 (95 건) 18,504,255,370 원
- 계속비이월 (20 건) 22,652,922,920 원이며

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

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

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보수 사업(보조) 사업외 1 건인

228,991,770 원으로서

- 명시이월 (1 건) 178,887,570 원
- 사고이월 (1 건) 50,104,200 원
- 계속비이월 (0 건) 0 원이며

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

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

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하수도공기업 운영 사업외 21 건인

15,029,020,850 원으로서

- 명시이월 (10 건) 11,414,855,840 원
- 사고이월 (7 건) 2,710,712,090 원
- 계속비이월 (5 건) 903,452,920 원이며

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.